

신구조문 대비표 - 수입신용장재개설 등에 따른 의뢰 및 중계에 관한 약정서

변경 전	변경 후	비고
	<p>6. 법규준수와 제재</p> <p>고객은 다음 사항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.</p> <p>(1) HSBC는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제재 또는 “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” 등과 같은 국내외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(법규준수 조치)를 취할 수 있으며, 기타 HSBC 그룹 계열사에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 할 수 있다. 이러한 법규준수 조치에는 다음 명시된 내용이 포함 될 수 있다.</p> <p>(a) 다음 명시된 사항을 거절:</p> <p>(i) 무역 서비스 발행, 개신, 연장, 이전 및 양도</p> <p>(ii) 청구금 지급 또는</p> <p>(iii) 제재 또는 국내외 법규에 어긋나는 무역 서비스 및 지시서 처리</p>	신규조항
<p>6. 기타사항 본 약정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은행간 관례 및 상호 합의에 따른다.</p>	<p>7. 기타사항 본 약정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은행간 관례 및 상호 합의에 따른다.</p>	조항번호 수정